

## 이천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

### 1. 제출자 : 이천시(2000.9.8)

### 2. 주요근거법령

- 주차장법 제7조 (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) 제1항
- 동법 제8조 (노상주차장의 관리) 제1항 및 제2항, 동법 제13조 (노외주차장의 관리) 제2항
- 동법 제12조 (노외주차장의 설치 등) 제1항
- 동법 제19조 (부설주차장의 설치)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별표1

### 3. 검토사항

- 동조례 제6조제2항의 표는 공영주차장관리의 위탁시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할 금액의 기준 중 기존의 기준만으로는 수익성에 문제가 있어 수탁자의 수탁유인이 부족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추가하였으며,
- 동조례 제7조·제13조·제14조제2호 내지 제4호·제17조 및 제18조의 삭제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과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